

# 2021년도 지방공무원 수당조정(사서 수당)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의견서

## 1 개요

- 단체명 : 한국도서관협회
- 수당구분 : 특수직무수당
- 요구구분 : 인상 및 지급대상 조정
- 요구내용 : 사서직 공무원(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인상
- 요구이유
  - 다목적 기능수행에 따른 감정노동 심화와 각종 위험에 노출
  - 새로운 업무의 대거 등장에 따른 전문성 및 특수성 강화
  - 사서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 지난 38년간 사서수당 동결
- **신구조문대조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현행	개정안
기술분야 11.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기술분야 11. 특수직무수당 나. 사서직 공무원( <b>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b>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5급 이상 : <b>월 50,000원 이하</b> · 6급 이하 : <b>월 30,000원 이하</b>

## 2 사서수당 변경 요구 이유

-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기관 중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함.  
(공공도서관 연이용자 2억 7823만 명, 출처: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도서관의 사서는 연령과 성별, 직업, 신념,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는 물론 불법체류자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든 불특정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도서관 서비스는 현장의 대면서비스로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의 폭언과 폭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성희롱과 성추행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사서들은 감정노동자로서 노동안전보건의 침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위기에서 도서관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함. 도서관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다수가 도서나 컴퓨터 등을 공용으로 이용하고,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동일 공간 내에서 서비스를 감당하는 사서는 집단지역 감염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사서업무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위험 직무가 되었음.
- 전통적인 책자형태의 자료들은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ICT 환경의 최첨단 형태의 디지털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또한 이용자 요구도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개인화되고 전문화되어 이를 감당하는 현장의 사서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 도서관은 물론 개인적으로 엄청난 교육압박감을 받고 있음.
- 상기 이유와 함께 사서수당은 1982년 이후 38년간 수당이 동결되어 있어 다른 직렬 수당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음.

### 3 사서수당 조정의 필요성

#### 1. 업무환경 측면

##### ○ 다목적 기능수행에 따른 감정노동 심화와 각종 위험에 노출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모색(10p.)
- 국민들이 아주 편하고, 쉽게 찾는 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기관임. 또한 도서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서비스가 강화되며 영유아 부터 노년까지 연령, 성별, 직업, 신념,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사서의 업무는 아주 쉽게 사서의 감정노동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노동안전보건의 침해 및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 \*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도서관 연 이용자수(27,823만 명), 박물관 연 관람인원(9,152만 명),

미술관 연 관람인원(1,908만 명), 문예회관 연 이용자수(2,036만 명),

지방문화원 연 참여자수(846만 명), 문화의집 연 이용자수(264만 명)

- 또한 이번 ‘코로나19’ 로 도서관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확인됨.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책과 각종 기기를 동시에 이용하고, 공용의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하게 됨. 하지만 사서들은 이용자를 위해 책 대출 서비스(북드라이브스루, 북워킹스루)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서는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염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임.
- 오늘날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수집·정리·제공·보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에 더해 지식정보센터, 문화향유 거점, 평생학습 산실, 정보해득력 서비스 강화, 지역 사랑방 또는 커뮤니티센터,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베이스캠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서관 사서직원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음.
-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특히 지역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은 주말(토, 일요일) 개관에 따른 근무와 개관시간 연장 등으로 심신의 피로 누적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크게 손상되고 있는 실정임.
- 대다수 도서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이나 문화나 독서 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업무 개발과 실행, 대민 서비스 증가, 육체적 심리적 피로 증가 등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

##### ○ 새로운 업무의 대거 등장에 따른 전문성 및 특수성 강화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 환경변화와 대응(24p.)
- 최근 인터넷과 디지털정보 유통 보편화로 온라인/디지털 형태 자료의 선정과 평가,

라이선스 계약 실무, 컨소시엄 참여와 협상, 온라인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 저작권 이해와 적용,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롭게 등장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디지털 정보유통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해득력 업무가 모든 도서관의 필수업무로 인식됨에 따라 전통적인 도서관업무에 추가하여 다양한 인터넷 정보검색 지원, 디지털자료실 운영, 디지털 정보기술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른 테크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접 도서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사서에겐 지급하는 사서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사서들이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또한 국가자격증인 사서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1급정사서와 2급정사서에 대해 각각 20,000원과 10,000원의 가산금 지급이 필요함.

### ○ 사서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정책과제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76p.)
- 총정원제, 총액임금제와 기준인건비 제도로 도서관 사서직 확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 또는 시간제 등 비정규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어 정규직원에게 관리 업무가 추가되고 있음.

## 2. 보수 및 유사직무 측면

### ○ 다른 직렬과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

-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직제상 행정직군 내 사서직렬로 편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군 내의 다른 직렬(전산직렬, 사회복지직렬 등)보다 수당 지급액이 적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사기저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시) 사회복지 : 월 7만원 + 가산금(자격증 소지자) 전산업무 :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5만원-2만원 지급
---

### ○ 사서수당 지급대상의 예외조항 개선 필요

- 사서직공무원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중 사서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는데, 현 규정에서는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서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도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서가 아닌 일반직에게도 사서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기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도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도 사서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따라서 사서직공무원 외에도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일반직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3. 연혁 측면 ※ 세부자료 별첨1 참조

#### ○ 지난 38년간 사서수당 동결

- 사서직공무원 수당은 1982년에 신설되었으나, 지급금액(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은 지난 38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았음. 반면 다른 직종 및 직렬의 수당은 몇 차례 인상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음.

수 당 명	지 급 액	
	1982년도	현재
사서수당	20,000원 ~ 30,000원	20,000원 ~ 30,000원
연구업무수당 (연구직 공무원)	35,000원 ~ 55,000원	80,000원 (가산금60,000원)
기술정보수당	10,000원 ~ 25,000원	20,000원 ~ 60,000원
민원업무수당	20,000원	50,000원
사회복지업무수당	30,000원 (2004년 신설)	70,000원 (가산금30,000원)

**별첨1**

**수당 연혁자료**

구분	비교대상수당 : <b>(지방직)사회복지업무수당</b>	조정요구수당 : <b>(지방직)사서수당</b>
시행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1.20. 제18235호에 최초규정</li> <li>◦ 지급액</li> <li>23. 사회복지업무수당</li> <li>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li> <li>- 월 30,000원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2.9., 제10723호에 최초규정</li> <li>◦ 지급액</li> <li>13. 사서수당</li> <li>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사서직공무원</li> <li>-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li> <li>-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li> </ul>
주요 인상연혁	<p>&lt;'10.1.7.&gt; <b>종전대비 약100%인상</b></p> <p>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li> <li>2) 가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li> </ol>	<p>&lt;'06.1.13.~현재&gt; <b>종전대비 인상 없음</b></p> <p>특수행정분야</p> <p>16.사서수당</p> <p>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li> <li>-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li> </ul>
	<p>&lt;'13.6.11.&gt; <b>종전대비 66.7%인상</b></p> <p>.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li> <li>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li> </ol>	<p>&lt;~현재&gt;</p> <p style="text-align: center;">상동</p>
	<p>&lt;'15.1.12.~현재&gt; <b>종전대비 30%인상</b></p> <p>.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li> <li>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li> </ol>	<p>&lt;'21년도 수당조정 요구안&gt; <b>종전대비 약66.7%인상</b></p> <p>11. 특수직무수당</p> <p>나. 사서직 공무원(<b>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b>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 이상: <b>월 50,000원 이하</b></li> <li>- 6급 이하: <b>월 30,000원 이하</b></li> </ul>

구분	비교대상수당 : 전산업무수당	조정요구수당 : (지방직)사서수당
시행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2.9., 제10723호에 최초규정</li> <li>◦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li> </ul>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 및 도의도시개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이상:월25,000원 이하</li> <li>- 6급 및 7급:월15,000원 이하</li> <li>- 8급이하:월10,000원 이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2.9., 제10723호에 최초규정</li> <li>◦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사서수당</li> </ul>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사서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li> <li>-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li> </ul> </li> </ul>
주요 인상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3.2.1., 제11034호 <b>종전대비 약120%인상</b></li> <li>3. 연구업무수당</li> <li>연구직공무원</li> <li>연구관 : 월 55,000원이하</li> <li>연구사 : 월 35,000원이하</li> </ul>	<p data-bbox="865 638 970 667">&lt;~현재&gt;</p> <p data-bbox="1120 705 1177 734">상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1.19., 제17490호 <b>종전대비 약45.5%인상</b></li> <li>3. 연구업무수당</li> <li>가. 연구직공무원</li> <li>월 80,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10., 제22620호 <b>종전대비 약75%인상</b></li> <li>3. 연구업무수당</li> <li>가. 연구직공무원</li> <li>월 80,000원</li> <li>(가산금)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li> </ul>	
	<p data-bbox="322 1270 427 1299">&lt;~현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연구업무수당</li> <li>가. 연구직공무원</li> <li>1)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80,000원</li> </ul> </li> <li>2)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li> </ul> </li> </ul>	<p data-bbox="865 1270 1375 1299">&lt;'21년도 수당조정 요구안&gt; <b>종전대비 약66.7%인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특수직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사서직 공무원(<b>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b> 사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li> <li>- 5급 이상: <b>월 50,000원 이하</b></li> <li>- 6급 이하: <b>월 30,000원 이하</b></li> </ul> </li> </ul>